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4월 30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15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4. 30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세무관리과장 장경인)

□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소액채납액 가산세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」 상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 상향(안 제5조)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55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3. 8. ~ 3. 28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사전심사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,
-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¹⁾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, 조례 제5조제1항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

1)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법소정금액을 가산세로 부과

-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 체납자의 기준 상향에 따라 등기우편 송달 비율이 줄어 고지서 발송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, 일반우편의 송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납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고지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 끝.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(‘24.1.1.시행, 법률 제19859호 2023. 12. 29. 일부개정)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②~⑨ (생략)
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①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“과소납부”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“초과환급”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,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

1.~3. 생략

4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

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②~③ (생략)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34조(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)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를 말한다.

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.